

# 에코푸드연구소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음식문화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를 위한 호서대학교 에코 푸드 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치)**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

**제 3조(사업내용)**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음식문화의 연구개발
2. 음식문화와 식생활교육의 전문 인력 양성
3. 산학협력을 통한 외식산업 육성
4. 국제표준화와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 학술활동
5. 개발한 기술의 패키지·상품화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 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교육부, 연구부, 대외협력부, 행정지원부 등을 둘 수 있다.

- ② 교육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연구부는 연구 기획 및 세부과제별 연구를 담당한다.
- ④ 대외협력부는 산학협력사업과 대외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 ⑤ 행정지원부는 회계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5조(구성)** ① 연구소 임원구성은 소장 및 각부에 부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전문위원, 연구보조원, 기술원 및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
- ⑥ 연구소내의 연구원 임용은 대학의 ‘연구원 임용규정’에 준용한다. 단,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
2. 예산 및 결산
3. 규정 개정 발의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4 장 재 정

**제8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
2.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
3.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
4.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제 9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 5 장 폐 소

**제10조 (폐소)**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 제 6 장 보 고

**제11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

## 제 7 장 보 칙

**제12조 (준용)**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